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위공직자의 기본적 신원사항 공개〉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95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개 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6

I. 개 요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수영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30.
3. 회부연월일 : 2025. 10.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적업무과 공익 수행의 자격과 윤리성 확보 및 공직자의 재산취득 과정 확인을 통해 공직자 윤리를 준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고위공직자의 나이, 출생지, 학력, 가족관계 등 기본적인 신원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인사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대통령실 소속 고위공직자는 국익을 최우선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신원 공개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공직자의 공적 업무 수행 자격성 여부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두텁게 확보하기 위함임(안 제14조의18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재산공개대상자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원사항을 등록하여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18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u>퇴직공직자의</u>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u>기본적 신원사항의 등록과 공개, 퇴직공직자의</u> ----- ----- ----- ----- ----- ----- ----- ----- -----.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 ----- ----- ----- -----

·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 4. (생략)

② ~ ⑥ (생략)

<신설>

<신설>

-----.

1. 재산등록사항 및 기본적 신원사항-----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장의3 기본적 신원사항의 등록 및 공개

제14조의18(기본적 신원사항의 등록

및 공개)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본적 신원사항을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등록기관에 재산을 등록할 때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본적 신원사항의 변동사항을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등록기관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공개할 때 기본적 신원사항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 18. (생략)

<신설>

19. ~ 21. (생략)

제30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신설>

④ 기본적 신원사항의 등록과 변
동사항 신고 및 공개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징계 등) -----

-----.

1. ~ 18. (현행과 같음)

19. 제1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기본적 신원사항을 등록하지 아
니하거나 제14조의18제2항을 위
반하여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
니한 경우

20. ~ 22. (현행 제19호부터 제21
호까지와 같음)

제30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14조의18제1항을 위반하
여 기본적 신원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18제2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6. ~ 11. (생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u>제5호까지</u>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⑤ (생략)	6. ~ 11. (현행과 같음) ④ ----- -----<u>제5호까지, 제5호의2에</u>----- ----- ----- ----- ----- ----- ----- -----. ⑤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현행법은 재산등록 및 공개(제2장),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제2장의2), 선물신고(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제4장)의 제도적 수단을 통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취지의 법률임.

재산등록 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감사·세무 등 일부 분야는 4급 미만 공무원),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 일정한 공직자에게 동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 중 법률에서 정하는 재산을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는 공직윤리 규정으로,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재산 증식의 억제를 도모하고 있음.

재산공개 제도는 재산등록의무자 중 고위공직자(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등)에 대하여 등록된 재산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재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주요사항》

□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제3조제1항 각 호)

-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감사·세무 등 일부 분야는 4급 미만 공무원),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제10조제1항 각 호)

-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일부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 등록대상재산(제4조)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 재산, 비영리법인 출연 재산과 외국 소재 재산 포함
- ※ 단,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 가능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골동품·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주식매수선택권
- 가상자산

□ 재산의 등록시기 및 등록기관(제5조)

◦ 등록시기

- (최초등록)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정기변동신고) 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
- (수시변동신고) 등록기준일의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등록기관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정부의 부·처·청은 그 부·처·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 포함)

자료: 인사혁신처

최근 고위공직자의 나이, 출생지, 학력, 가족관계 등 신원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¹⁾ 고위공직자의 업무 수행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산 공개와 함께 기본적인 신원 사항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공적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기본적인 신원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이해충돌이나 부정청탁의 억제를 도모하고 공직 윤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기본적 신원사항의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등록·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²⁾

이러한 현행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직자의 재산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동 법률의 정책수단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 장구슬 기자, 「시민단체, ‘李 측근’ 김현지 고발… ‘나이·학력 비공개는 직권남용’」, 『중앙일보』, 2024. 10. 1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2333>

2) 「공직자윤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본적 신원사항의 공개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재산공개 제도는 공익 실현을 위하여 공직자의 사생활의 비밀·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등록의무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정안에서는 공개하려는 ‘기본적 신원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등록·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나 과태료도 예정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며,

공개대상을 공직자에 한정하지 않고 재산을 등록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직계비속까지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권 제한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은 심사 과정에서 재산공개대상자의 신원사항 공개의 필요성과 더불어 현행법의 정책목표와 그 실현수단으로서의 적절성, 그리고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헌법 원칙의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인사혁신처는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및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고위공직자의 공무수행 자격 확인을 목적으로 신원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해외 주요국에도 고위공직자의 신원 사항을 신고·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또한, 입법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민감한 신원 정보의 공개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재산 공개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신원사항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더 크며, 기본적 신원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 목적과의 부합 여부, 사생활 침해 우려 및 기본적 신원사항의 불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